

# APPRAISAL REPORT

: ( ) :

(2025 1098)

:

: 250807-12-3001

DEOGAM

) , ( ) , ( ) (

( )

						( )
						(\229,386,000 -)
						4
						( : )
( )	(2025 1098)				-	
						2025. 08. 11
						2025. 08. 06 ~ 2025. 08. 11
						2025. 08. 11
						( ) ( )
						( ) ( )
						330 330 393,000 129,690,000
						83.08 83.08 1,200,000 99,696,000
						\229,386,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소재 '충청남도 도청' 복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4계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8월 11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8월 7일 ~ 2025년 8월 11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 III. 기타 참고사항

### 1. 임대사항의 확인

- ① 미상임.

### 2.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현장 방문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및 탐문조사내역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조 바람.



DEOGAM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24-26	
토 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이용상황	단독주택
	지 목	대
	면 적	330 m <sup>2</sup>
건 물	구 조	블록구조
	주 용 도	단독주택
	사용승인	2020.01.30
	연 면 적	83.08 m <sup>2</sup>

DEOGAM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삼교읍 신리 324-26	330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지	157,10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공시지가(원/m <sup>2</sup> )
A	삽교읍 신리 263-1	426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로(가)	세장형 평지	160,400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계획관리	0.405	충청남도 예산군 (25.01.01~25.08.11 ) 2025.01.01 ~ 2025.06.30 : 0.328 2025.06.01 ~ 2025.06.30 : 0.055  ( 1 + 0.00328 ) * ( 1 + 0.00055 * 42/30 ) ≒ 1.00405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1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인근환경 등 우세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나)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삽교읍 신리 324-27	332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2024.05.20	공매(국 세,지방세 )	383,000	-
(2)	삽교읍 신리 324-19	328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2024.05.20	공매(국 세,지방세 )	407,000	-
(3)	삽교읍 신리 324-25	330	계획관리	대 단독주택	2024.05.20	공매(국 세,지방세 )	395,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다)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덕산면 사동리 382	계획관리 대/상업나지	570,000,000원 (@ 333,625원/m <sup>2</sup> )	2021.09.10 -	1,708.5m <sup>2</sup> -	-
	의견	1) 2) 토지가격 : 570,000,000원 / 1,708.5m <sup>2</sup> ≒ 333,625원/m <sup>2</sup>				
#2	덕산면 신평리 546	계획관리 대/상업나지	600,000,000원 (@ 473,372원/m <sup>2</sup> )	2023.09.08 -	1,267.5m <sup>2</sup> -	-
	의견	1) 2) 토지가격 : 600,000,000원 / 1,267.5m <sup>2</sup> ≒ 473,372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경매 동향

용도별	충남 예산군 2024년 08월 ~ 2025년 07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단독주택	8,832,078,040	3,298,037,739	37.3	45	12	26.7
대지	3,659,407,900	1,854,321,080	50.7	35	6	17.1

(출처 : 인포케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액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② 보정치 산정

####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액 (a)	사례단가 <sup>1)</sup> (원/㎡)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395,000	1.00933	1.000	0.900	358,816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액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2.227	2.22
	160,400	1.00405	-	-	161,050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3)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4.05.20 ~ 2025.08.11, 예산군 계획관리지역) : 0.933% (1.00933)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3)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3) 대비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0.90	1.00	1.00	1.00	0.900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160,400	1.00405	1.000	1.100	2.22	393,283	393,000	주택지대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2	덕산면 신평리 546	계획관리 대/상업나지	600,000,000원 (@ 473,372원/m <sup>2</sup> )	2023.09.08 -	1,267.5m <sup>2</sup> -	-
	의견	1) 2) 토지가격 : 600,000,000원 / 1,267.5m <sup>2</sup> ≒ 473,372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2 계획관리	1.305	충청남도 예산군 (23.09.08~25.08.11 ) 2023.09.01 ~ 2023.09.30 : 0.059 2023.10.01 ~ 2023.10.31 : 0.039 2023.11.01 ~ 2023.11.30 : 0.043 2023.12.01 ~ 2023.12.31 : 0.034 2024.01.01 ~ 2024.12.31 : 0.734 2025.01.01 ~ 2025.06.30 : 0.328 2025.06.01 ~ 2025.06.30 : 0.055  $( 1 + 0.00059 * 23/30 ) * ( 1 + 0.00039 ) * ( 1 + 0.00043 ) * ( 1 + 0.00034 ) * ( 1 + 0.00734 ) * ( 1 + 0.00328 ) * ( 1 + 0.00055 * 42/30 ) \approx 1.01305$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2]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95	본건이 사례 대비 열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2	본건이 사례 대비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0.95	본건이 사례 대비 열세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83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2	473,372	1.000	1.01305	1.000	0.830	398,026	398,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고
1	393,000	398,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어 수요성, 환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목적에도 부합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2. 건물 감정평가액

###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2	1층	블록구조 징크판넬지붕	단독주택	83.08	2020.01.30	중

부대설비 내역									
일련 번호	난방	냉방	위생	급배수	소화 설비	화재 탐지	승강기	도시 가스	기타
2	0	—	0	0	—	—	—	—	—

### (2) 건물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 (3)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sup>2</sup> )	보정단가 (원/m <sup>2</sup> )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비고
2	ALC블럭 징크판넬지붕	1,200,000	160,000	1,360,000	45	1층 (단독주택)

※ 상기 기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sup>2</sup> )	내용년수
01-01-02-05	일반주택	벽돌조/목조지붕틀/금속기와	4	1,287,000	45 (40~50)
01-01-02-05	일반주택	벽돌조/목조지붕틀/금속기와	5	1,064,000	45 (40~50)
01-01-04-01	일반주택	블록조/박공지붕/시멘트기와	3	1,385,000	40 (35~45)
01-01-04-02	일반주택	블록조/목조지붕틀/소골슬레이트	5	937,000	40 (35~45)

#### (4)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m <sup>2</sup> )	비고
				실제	유효				
2	1층 (단독주택)	1,360,000	45	5	5	40	40/45	1,200,000	-

DEOGAM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129,690,000
	건 물	99,696,000
	합 계	229,386,000

결정의견	경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				
1		324-26			330	330	393,000	129,690,000	
2	[ ]	324-26			83.08	83.08	1,200,000	99,696,000	2020.01.30 1,360,000 x 40/45
	72-31								
								<b>√229,386,000.-</b>	

DEOGAM

(1)	(2)	(3)
(4)	(5)	(6)
(7)	(8)	(9)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소재 "충청남도 도청"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담, 전,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도시근교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원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 말, 젓소, 양, 사슴, 염소, 신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 (4) (7)	(2) (5) (8)	(3) (6)
-------------------	-------------------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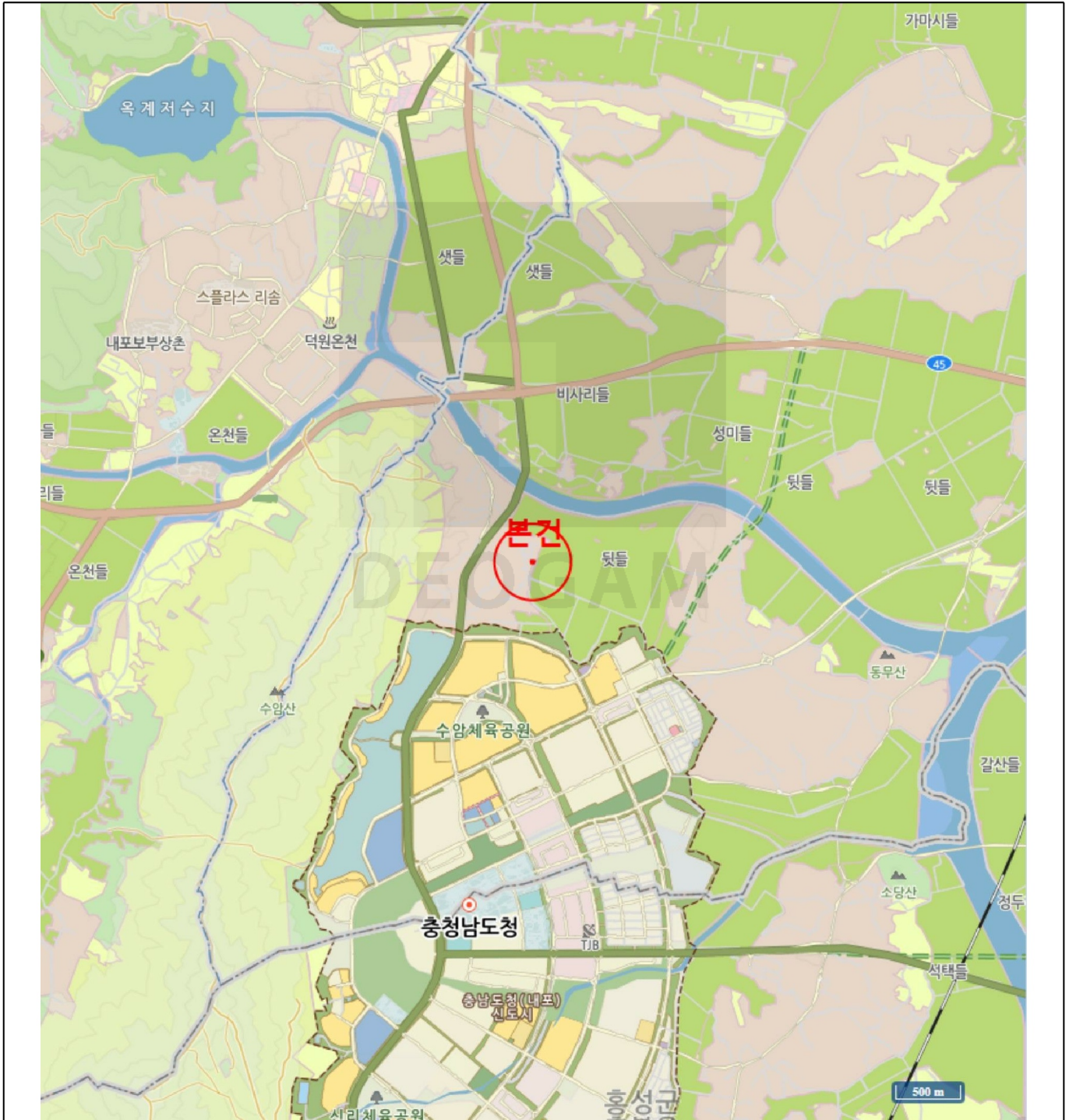
-



(1) (4)	(2) (5)	(3) (6)	(	)
(1) 건물의 구조				
블록구조 징크판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스타코 마감 등,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마감 등 바 닥: 몰탈노출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마감 등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급. 배수시설 및 난방시설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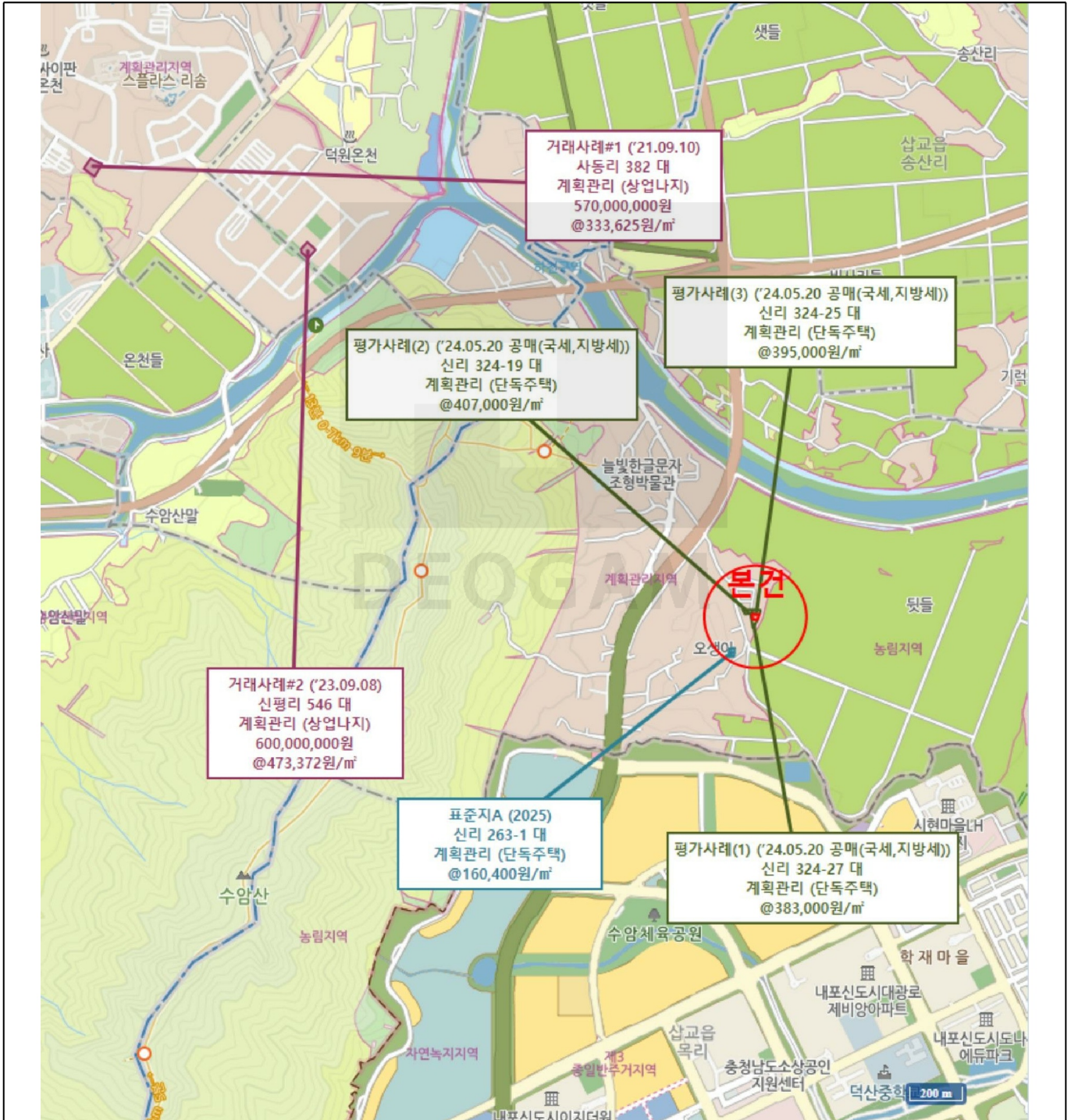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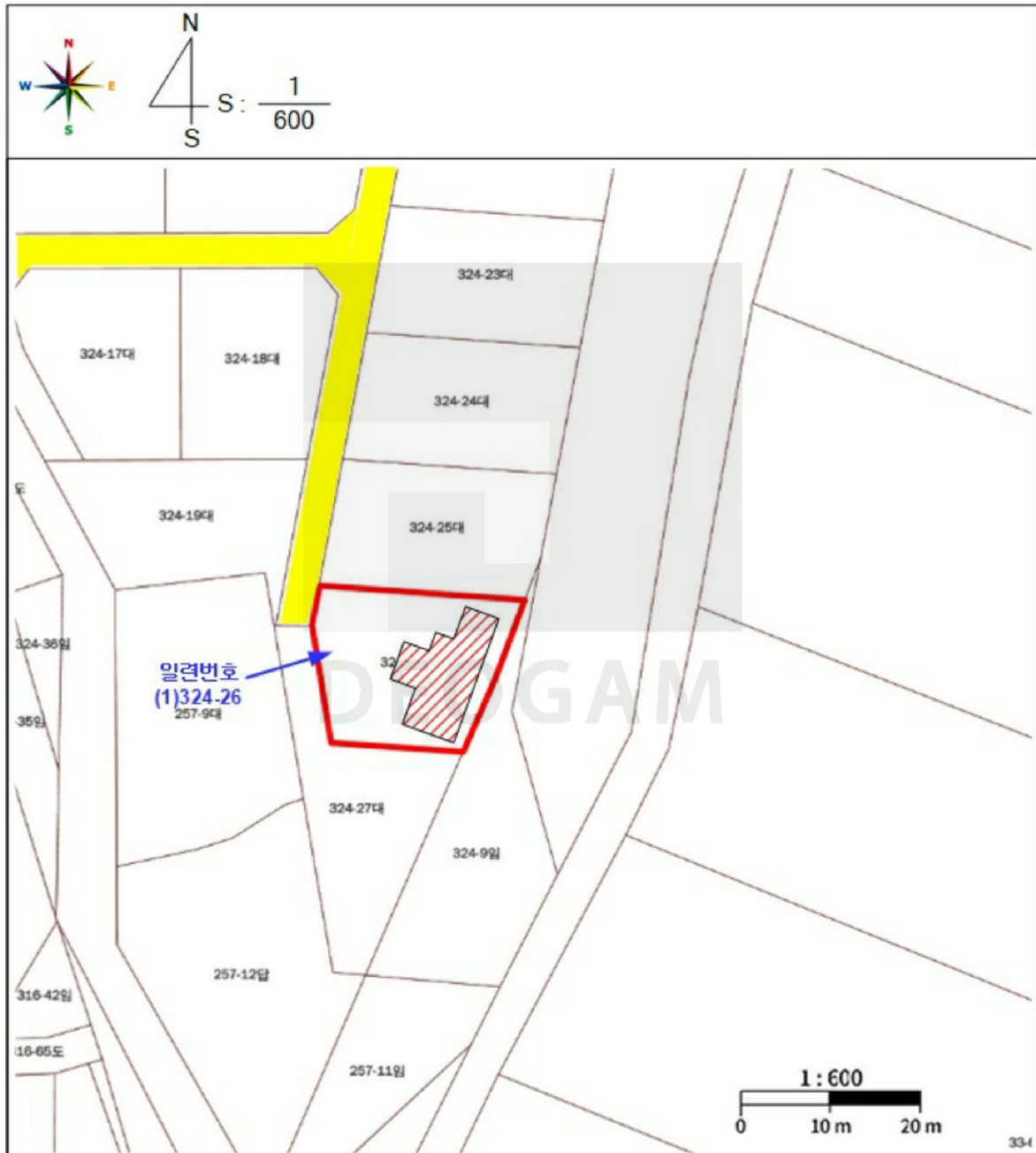
324-26





3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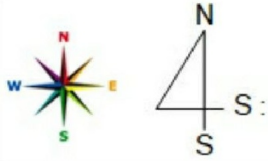


<p>단</p> <p>례</p>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등기)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미등기)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3층이상		지하층

334



324-26



번 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등기)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미등기)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3층이상	지하층



DEOGAM

